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1015호 2014. 3.17.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2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2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----- 3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281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----- 5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300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 예고 ----- 13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304호 인천광역시 서구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(안) 입법예고 ----- 14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홍보미디어과 [032-560-4142]

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26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03. 14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변경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원창로89번길 47외 23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유
		별 도 열 램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3. 1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4-03-14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 서구 원창동 20-3, 20-4	원창로89번길 47	2009.08.28	원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	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지구 B3블럭 5로트	청중로478번길 22	2012.10.19	청중로 시작지점부터 4,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3	인천 서구 연희동 789-19	담지로8번길 6	2011.02.14	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,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 부여	
4	인천 서구 연희동 774-5	청라에메랄드로133번길 25	2010.11.05	청라에메랄드로의 시작점에서 1,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5	인천 서구 원창동 21-18, 137-7	봉수대로501번길 56	2009.07.01	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,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6	인천 서구 검암동 523-5	검암로19번길 11	2009.08.28	검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7	인천 서구 가좌동 591-5	장고개로117번길 50	2009.06.30	장고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8	인천 서구 석남동 520-23	염곡로260번길 12-1	2009.08.28	염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,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9	인천 서구 왕길동 672-3	완정로165번길 37	2008.11.21	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6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0	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47-10블럭	이든로 10	2012.10.19	"착하고 어질다"라는 뜻의 순우리말에서 착안	
11	인천 서구 원당동 820-8	원당대로835번길 10	2008.11.21	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,3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2	인천 서구 원당동 820-7	원당대로835번길 8	2008.11.21	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,3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3	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26-1블럭	도담4로 18	2012.10.25	도담로에서 네번째 분기되는 도로	
14	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26-6블럭	도담4로 14	2012.10.25	도담로에서 네번째 분기되는 도로	
15	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16-8블럭	보듬2로 7	2012.10.25	보듬로에서 두번째 분기되는 도로	
16	불로동 553-7	검단로744번길 55	2008.12.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,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7	원당동 산125-5	원당대로819번길 21-1	2008.11.21	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,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8	당하동 448-2	드림로 705	2009.07.10	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	
19	마전동 408-1	마전로 193-1	2008.12.31	마전이라는 법정동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	
20	당하동 574-5	드림로 625	2009.07.10	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	
21	마전동 295-2	검단로 624-1	2008.12.31	현 금곡동 쇫골마을 뒷산 사자봉 남쪽 기슭에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지명 부여	

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27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14. 03. 14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염곡로260번길 12-1외 7건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	별 도	열 람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

고시일 : 2014-03-14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인천 서구 석남동 520-23	염곡로260번길 12-1	2014.03.10	건축물 멸실	
2	인천 서구 검암동 651-1	승학로422번길 24	2014.03.07	건축물 멸실	
3	인천 서구 당하동 1077-6	원당대로 638	2014.03.04	건축물 멸실	
4	인천 서구 가좌동 602-10	건지로 90	2014.03.04	건축물 멸실	
5	백석동 51-114, 51-242	서곶로 634	2014.03.14	기존건물철거	
6	백석동 48-8	서곶로 624-8	2014.03.14	기존건물철거	
7	백석동 51-5	서곶로 641	2014.03.14	기존건물철거	
8	백석동 50-3	서곶로 624-5	2014.03.14	기존건물철거	

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281호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」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4. 3. 1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금고 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고의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개선한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, 규칙의 관련서식 등을 정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용어의 약칭, 띄어쓰기,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
(안 제명, 제1조, 제3조, 제5조, 별지 제2호서식)
-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 서식의 일부 평가항목을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맞춰 정비
(안 별지 제3호서식)
-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 변경 (안 별지 제4호서식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4. 3. 3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세무1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(우)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/ ☎ 032-560-4191,
FAX 032-560-2723]

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구금고(이하 “금고”라 한다)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평가기준”을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조례 제3조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(이하 “금고”라 한다) 평가기준”으로 한다. 제5조 중 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제3조의 규정을”을 “제3조를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금고지정”을 “금고 지정”으로,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에 따라”로, “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“인천광역시서구청장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심사기준란의 제1호나목 중 “무수익여신비율”을 “고정이하여신비율”로 하고, 제2호다목 중 “공공예금”을 “공금예금”으로, 같은 호 라목 “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”를 “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”로 하며, 제3호가목 중 “지점현황”을 “지점의 수”로 하고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
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



나. 구와 협력사업

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기관란 중 “(세무과)”를 “(세무1과)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"구"라 한다) 구금고(이하 "금고"라 한다)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심의 및 평가) ① <u>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·평가한 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, 위원장은 이를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(심의 및 평가) ①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는 조례 제3조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(이하 "금고"라 한다) 평가기준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

제5조(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·평가)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변경 또는 해지 결정을 위한 심의·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조(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·평가) --- 제8조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 제3조를 -----

(별지 제2호서식)

(별지 제2호서식)

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	
<p>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관련 ()의 제안서 심사결과에 따라, 총점 점(평균 점)을 획득하였음을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(인)</p> <p>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</p>	
심사결과 (의견)	
첨부서류	금융기관 심사표 및 집계표 각 1부

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금고 지정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에 따라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(인)</p> <p>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</p>	
심사결과 (의견)	
첨부서류	금융기관 심사표 및 집계표 각 1부



(별지 제3호서식)

심사기준	위원별									합계	평균
총 계										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										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										
- 국외평가기관											
- 국내평가기관											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										
- BIS 자기자본비율(안정성)											
- 자기자본이익율(수익성)											
- 무수익여신비율(건전성)											
- 대손충당금 적립율(건전성)											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											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										
나. 자치단체 대출금리											
다. 공공예금 적용금리											
라.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											
3. 주민이용의 편의성											
가.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											
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											
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									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										
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										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										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										
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										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											
가.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											
나. 구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											

(별지 제3호서식)

심사기준	위원별									합계	평균
총 계										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										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										
- 국외평가기관											
- 국내평가기관											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										
- BIS 자기자본비율(안정성)											
- 자기자본이익율(수익성)											
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)											
- 대손충당금 적립율(건전성)											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											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										
나. 자치단체 대출금리											
다. 공공예금 적용금리											
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										
3. 주민이용의 편의성											
가.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											
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											
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									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										
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										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										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										
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										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											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											
나. 구와 협력사업											



(별지 제4호서식)

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

제출인	상 호		성 명	
	주 소			
접수사항	접수일자		접수번호	
	접수내역			
	접수기관	인천광역시 서구 (세무과)	접수자	
비 고				



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

제출인	상 호		성 명	
	주 소			
접수사항	접수일자		접수번호	
	접수내역			
	접수기관	인천광역시 서구 (세무과)	접수자	
비 고				

(별지 제4호서식)

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

제출인	상 호		성 명	
	주 소			
접수사항	접수일자		접수번호	
	접수내역			
	접수기관	인천광역시 서구 (세무1과)	접수자	
비 고				



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

제출인	상 호		성 명	
	주 소			
접수사항	접수일자		접수번호	
	접수내역			
	접수기관	인천광역시 서구 (세무1과)	접수자	
비 고				

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300호

「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03월 13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「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 예고

1. 개정취지

- 참전명예수당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을 확대하고,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 및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함.
-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- 지원 대상 확대(안 제3조)
 -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1년 ⇒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3개월
- 모순된 표기와 불필요한 용어 등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(안 제5조 및 제10조)
 - 수당 및 위로금 지급 총금액을 삭제하고 서구 지원금만 표기함으로 수혜자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.
 - 참전명예수당 월8만원(시5만원, 구3만원) 지급 ⇒ 월3만원 지급
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(시20만원, 구10만원) 지급 ⇒ 10만원 지급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· 단체나 개인은 2014년 04월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복지정책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(560-4295) 및 FAX(560-2738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304호

인천광역시 서구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3월 13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서구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(안)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「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에 의거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제1조 목적에 대한 정의
- 제2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관한 사항
-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
-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
-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
- 제6조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



3. 의견제출

이 규칙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, 전화 : 032-560-4102, FAX : 032-560-27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,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(안)

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[안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원면직의 제한)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호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「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」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.

1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
2.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
3. 감사원, 검찰,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
4.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

제3조(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)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반자에 대한 문책)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5조(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)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운영세칙)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